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법률 제17856호, 2021.1.5.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규정(제9조의2제1항~제6항)
- 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규정(제9조의4제1호~제4호)
- 다.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및 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제9조의7 및 별표 9의2)
- 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절차 및 평가·공시에 필요한 사항 마련(제9조의10제1항~제6항)
- 마. 통합허가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제25조 및 별표 14 제2호 다목)
- 바. 기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필요한 사항 등 규정(제9조의2~제9조의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배출영향분석”을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성, 작성양식 등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 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의3(통합허가서류 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은 영 제33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 입력·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를 제2항에 따라 입력하여 보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4(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업무)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측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도면 제작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 및 상세내역의 조사·작성
4.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의5(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개요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통합허가서류등 업무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제9조의7(통합허가서류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 법 제11조의
4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9
의2와 같다.

제9조의8(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
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
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의9(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①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영업수행능력 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

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 평가방법,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1(통합허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행실적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본 1부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제9조의12(통합허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11조의10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사람(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기술자 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13(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제9조의14(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의15(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전문심사원

제25조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제11조의7제1항,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를 “환경전문심사원에게”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가목 단서 및 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조업정지”를 각각 “조업정지(같은 호 다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합허가대행업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5호				

가)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3명 미만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3명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1개월 이상 사무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갖춰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법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7호	등록취소			
8)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 서류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1) 법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 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9조의6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7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 위 표의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제9조의7 관련)

1.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가.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황·분석 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배출영향이 실제보다 적을 것으로 산출하게 하는 경우
- 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내 전체 공정에 대한 현황·분석 자료 등을 조사하지 않고도 조사한 것으로 통합허가서류등에 제시한 경우
- 다.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배출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2. 통합허가서류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허가기관이 통합허가서류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통합허가서류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항목·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범위를 누락하는 경우
 - 나.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에서 제시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다. 해당 사업장의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누락한 경우
 -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을 누락한 경우
 - 마.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를 누락하는 경우
 - 바. 설계도 및 공정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누락하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변경 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3.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본 신청서의 작성은 통합허가대행업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등록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 사무실의 소재지

처리절차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1.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업무명							
2.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업무개요							
대행자 (대표회사)		상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3.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개요							
대행금액	원		계약일		준공 예정일		
해당 연도 대행금액	원		해당 연도 계약일		해당 연도 준공 예정일		
4.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업무별 재대행 예정계획(해당 연도)							
재대행할 주요 업무	재대행자				재대행 용역		
업무명	상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 지	등록업 종	① 선정 방식	세부 업무내역	재대행 금액	
						② 재대행 부분금액(A)	③ 재대행 계약금액(B)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재대행하려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개요 2.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업무 명세서
------	--

작성방법

1. ①란의 선정방식은 재대행자를 선정한 주요 방식으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재대행 부분금액은 재대행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재대행 계약금액은 대행자가 재대행자와 재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④란의 재대행률은 재대행 계약금액을 재대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5. 신청인이 공동일 경우 공동신청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통합허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승계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_____)		
피승계인	상 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_____)		
승계구분	[] 상속	[] 양도·양수	[] 합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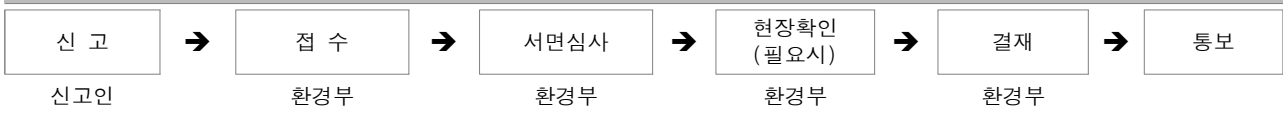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통합허가대행업 폐업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대행업체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폐업(휴업) 일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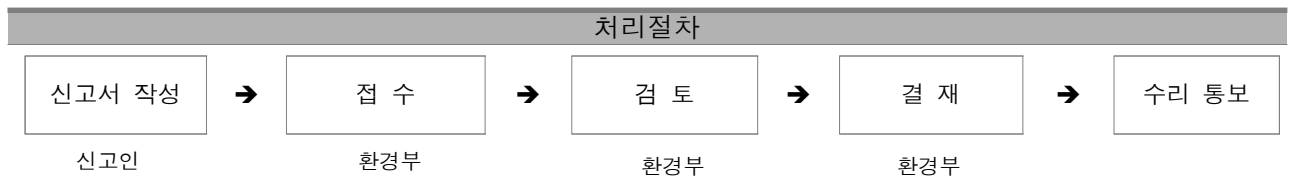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9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통합허가대행업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대행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_____)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0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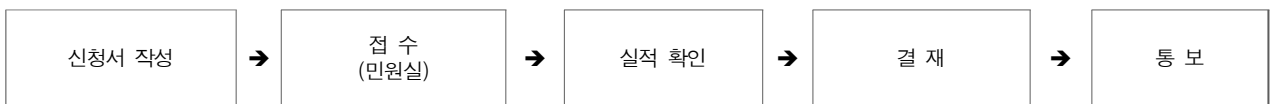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장관(통합허가제도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계약 [] 체결 [] 변경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제출자 현황

대행업체 명칭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대행업무 현황

대행사업장 명칭			
대행사업장 소재지		대행업무 기간	
대행업무의 개요			

3. 계약 현황

발주자(기관)			전화번호	
계약자	주 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			
	공동계약자 :	지분금액(백만원) 및 지분율(%)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			
	재대행자 :	재대행금액	백만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번호 :)		재대행계약기간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백만원	낙찰률	%	
사전협의 통보일자		준공일자		

첨부서류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생 략)</p> <p>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u>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u></p> <p>② ~ ⑤ (생 략)</p> <p>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⑤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사전협의)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 분석”이라 한다)</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성, 작성양식 등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u></p> <p><u>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u></p>

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4의2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통합허가서류 등의 보존

기간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 제2호 본문 및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은 영 제3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입력·보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를 제2항에 따라 입력하여 보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사업자의

<신 설>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의4(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업무)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오염도 및 배출농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등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도면 제작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 및 상세내역의 조사·작성

4.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9조의5(통합허가서류 등의 작성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 4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개요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대행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통합허가서류등 업무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을 검토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에 대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신 설>

제9조의7(통합허가서류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기준) 법 제11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

<신 설>

한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9조의8(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9조의9(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①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신 설>

제6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통합
환경허가시스템에 공고해야 한
다.

제9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
의8제1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통합허가
대행업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
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행정처
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 평가방법, 공시 절차 등 영업수

<신 설>

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1(통합허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행실적을 말한다.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대행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서류 등 작성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통합허가서류 등 작성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본 1부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제9조의12(통합허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

<신 설>

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 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기술 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사람(보수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기술자 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13(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제9조의14(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교육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9조의15(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

<p>기관 등) ① (생략)</p> <p>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u>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u></p> <p>5. 6. (생략)</p> <p>③ (생략)</p> <p>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u>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u></p> <p>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p> <p>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u>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u>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경전문심사원</u></p> <p>5.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u>법 제11조의7제1항, 법 제14조제2항</u>----- ----- -----.</p> <p>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환경전문심사원에게</u> ----- ----- -----.</p>
--	---